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연구자협의회 설치 근거 등 〉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19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연구자협의회 설치 근거 등(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신설)	2
[참고] 연구기관별 주요 노동조합 가입 현황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수진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3.

다. 회 부 일 : 2025.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회는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연구환경과 연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 구조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연구자협의회 설치 근거 등(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연구직 직원을 대표하는 연구자협의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하 “연구회”)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자협의회 대표자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에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 ① (생략)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 -----원장 및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자협의회 의회의 대표자로-----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25조의2(연구자협의회) ① 연구기관 소속 연구직 직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2조¹⁾에 따라 연구회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는 연구회 이사회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연구기관 원장 임면, 연구기관 기능 조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함.

한편, 연구회에는 현행법 제25조²⁾에 따라 연구회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 이사장, 연구회 이사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들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두고 있음.

개정안은 연구직 직원의 처우 개선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연구자협의회'를 두고, 연구자협의회 대표자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협동·융합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첫째, 연구직 직원의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전에 기관별로 운영 중인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참고] 연구기관별 주요 노동조합 가입 현황).

각 연구기관별로 처우나 여건이 다르다는 점과 더불어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에 관한 의사결정은 총인건비 인상률 및 예산의 범위에서 개별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³⁾에서 현재는 직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에 기관별 노사협의회가 대응하고 있음.

기관별 노사협의회가 아닌 모든 연구기관을 포괄하는 연구자협의회를 연구회 내에 두는 것이 종전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형태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25조의2에 따라 신설되는 연구자협의회는 개별 연구기관 소속 연구직 직원의 입장만을 대변하므로 연구직을 제외한 직군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 6월 말 현원 기준 23개 출연(연) 정규인력 14,486명 중 연구직은 64.4%(9,328명)이며, 그 외 기술직, 기능직, 행정직 등 약 35%(5,157명)의 연구지원직이 근무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직 직원만을 대표하는 연구자협의회를 두고 그 대표자만을 경영협의회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 기관 내 직군 간 갈등이 유발될 소지도 있음.

3) 다만, 각종 수당 등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원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기한에 따라 기관별 인력운영계획 수립과 예산 요구·반영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연구회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야 함.

<기관별 연구직 / 非연구직 직원 수 현황>

연번	기관명	연구직 직원 수 (비율)		연구직 외 직원 수 (비율)		직원 수 합계
1	KIST	566	(60.0%)	378	(40.0%)	944
2	녹색연	42	(71.2%)	17	(28.8%)	59
3	기초연	167	(42.4%)	227	(57.6%)	393
4	생명연	250	(38.5%)	400	(61.5%)	650
5	KISTI	302	(55.3%)	244	(44.7%)	546
6	한의학	156	(48.4%)	166	(51.6%)	322
7	생기원	934	(82.9%)	193	(17.1%)	1,126
8	ETRI	1,832	(81.4%)	419	(18.6%)	2,251
9	국보연	450	(85.4%)	77	(14.6%)	527
10	건설연	518	(75.6%)	167	(24.4%)	685
11	철도연	254	(72.2%)	98	(27.8%)	351
12	표준연	298	(60.2%)	197	(39.8%)	495
13	식품연	143	(45.0%)	175	(55.0%)	318
14	김치연	71	(68.9%)	32	(31.1%)	103
15	지자연	327	(62.8%)	194	(37.2%)	521
16	기계연	354	(68.9%)	160	(31.1%)	514
17	에기연	347	(63.0%)	204	(37.0%)	551
18	전기연	277	(41.0%)	399	(59.0%)	676
19	화학연	380	(61.3%)	240	(38.7%)	620
20	독성연	157	(44.6%)	195	(55.4%)	352
21	원자력	1,083	(64.7%)	592	(35.3%)	1,674
22	재료연	244	(61.5%)	153	(38.5%)	397
23	핵융합	178	(43.3%)	233	(56.7%)	411
합계		9,328	(64.4%)	5,157	(35.6%)	14,486

주1. 직접고용 및 전일제 환산 기준 (예. 주 20시간 근무 시 20/40=0.5명으로 환산함)

주2. 기관별 현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2025.11.

셋째, 신설하려는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경영협의회에 포함시키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경영협의회는 연구회가 설립된 이후 연구회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연구회 이사장, 이사, 23개 연구기관의 원장만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직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각 연구기관별로 연구분야, 규모, 특성 등이 상이함에도 연구자협의회를 전 연구기관 통합 형태로 운영할 경우 경영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한 연구자협의회 대표자 선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대표자가 선출되더라도 모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보임.

연구직 직원 수가 많은 특정 기관이 연구자협의회 대표자를 독식하거나, 연구자협의회 대표자가 원 소속기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연구자협의회 대표자를 경영협의회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236

참고

연구기관별 주요 노동조합 가입 현황

연번	기관명	구분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2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자체노조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체노조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6	한국한의학연구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공운수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9	국가보안연구소	없음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자체노조
1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체노조
		한국노총
1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체노조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13	한국식품연구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14	세계김치연구소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1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16	한국기계연구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18	한국전기연구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한국노총
19	한국화학연구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자체노조
20	국가독성과학연구소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21	한국원자력연구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22	한국재료연구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23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2025.11.